

의안번호	2215742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6. 4. 23.
추계번호	25A7219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안 제7조), ②실태조사(안 제8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1,200만원(연평균 6,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안 제7조)	13	26	26	26	26	117	23
실태조사(안 제8조)	39	39	39	39	39	195	39
합계	52	65	65	65	65	312	62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2027년의 경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의 임기는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통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촉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수출 및 해외진출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4	안 제12조(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수출·수입 물품의 품명·수량·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정보 나. 중소기업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지급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3.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상품 및 서비스수출·수입의 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기술무역통계의 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수출입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기술도입자, 기술제공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국가명, 기술료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계약일, 도입기술명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기업부장관 이 정하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 관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 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13조(성과평가)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촉진계획 및 제9조에 따른 통 합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4조(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및 해외진출에 관한 필요한 정 보를 수집 및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5조(상담창구 의 운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변화 및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의 접수 및 청취 2. 통상 분쟁 발생 시 법률, 기술, 시장 전문가의 상담 및 자 문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창구를 통해 피 해가 접수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6조(대응체계 구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해외진출 환경 변화 발생 에 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대응체계(이하 “대응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체계”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분석 및 공유 2.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 창구 공동 운영 3.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안 제17조(긴급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융자·보증 및 긴급 물류·통관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된 지원정책을 긴급으로 실시할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량규정
10	안 제18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로 인해 애로 또는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애로 및 피해 현황 지속 점검 2. 기업 연계지원 현황 점검 및 추가 지원 3. 그 밖에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1	안 제19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가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으로의 전환이나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의 산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1조(교육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지원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발 2. 수출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경제환경 및 행정, 법제도, 금융 등 해외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4. 수출입 통관 관련 교육과정 운영 5. 그 밖에 수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15	안 제23조(해외마케팅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2.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 홍보 활동 지원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16	안 제24조(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2.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3.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및 물류 지원 4.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 5. 그 밖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17	안 제25조(해외수출 규제 대응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의 산업 · 안전 등에 관한 인증 또는 규격 획득 2. 공급망 관련 규제 대응 3. 외국의 표시 규제 준수 4. 그 밖에 해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항 각 호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8	안 제26조(금융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 및 수출 활동에 대해 출연·보조·융자·보증·투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9	안 제27조(통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입 물품의 신고 및 검사 관련 절차 지원 2. 수출입 통관에 관한 전문가 자문 지원 3. 그 밖에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20	안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 물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운영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관, 시설 또는 조직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물류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21	안 제29조(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의 수출 고성장을 위해 지원사업 우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30조(유형별·단계별 수출성장 촉진)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23	안 제33조(사전준비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5.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4	안 제34조(교육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발 2. 법제도, 금융 등 해외시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그 밖에 해외진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5	안 제35조(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26	안 제36조(현지화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현지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2. 해외 현지 투자 유치 지원 3. 현지 법률·세무·회계·노무 지원 4. 해외 현지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현지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27	안 제37조(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28	안 제38조(사후관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효과 점검을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29	안 제39조(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2.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진출거점 확보 3.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30	안 제40조(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 정부, 공공 기관 또는 국제 기구가 발주하는 조달 시장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수출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 구매 납품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재량규정
31	안 제41조(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2	안 제42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과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관리,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량규정
33	안 제43조(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량규정
34	안 제44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수출 및 해외 진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제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35	안 제45조(시장별 특화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해외진출 시장별 특성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이하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2. 해외시장별 특수성을 고려한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해외시장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36	안 제46조(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에 지원거점(이하 “해외진출 지원거점”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37	안 제47조(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38	안 제48조(민관협력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대기업, 중견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9	안 제49조(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40	안 제5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컨설팅 3.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4. 해외 공공조달 정보의 제공 5.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컨설팅 지원 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7.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 8.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분석 9.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10.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국가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41	안 제5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	○ 미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2	안 제7조(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	-
3	안 제8조(실태조사)	○	-
4	안 제12조(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지출 발생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5	안 제13조(성과평가)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정보 제공, 긴급지원, 금융 및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출전략 수립 지원,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해외관로 개척 지원, 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 현지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6	안 제14조(정보 제공 등)	×	
7	안 제15조(상담창구의 운영)	×	
8	안 제16조(대응체계 구축)	×	
9	안 제17조(긴급지원)	×	
10	안 제18조(사후관리)	×	
11	안 제19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	
12	안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13	안 제21조(교육 지원)	×	
14	안 제2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	
15	안 제23조(해외마케팅 지원)	×	
16	안 제24조(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	※ [참고자료]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7	안 제25조(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	

18	안 제26조(금융지원)	×	
19	안 제27조(통관 지원)	×	
20	안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	
21	안 제29조(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등)	×	
22	안 제30조(유형별·단계별 수출성장 촉진)	×	
23	안 제33조(사전준비 지원)	×	
24	안 제34조(교육 지원)	×	
25	안 제35조(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26	안 제36조(현지화 지원)	×	
27	안 제37조(금융지원)	×	
28	안 제38조(사후관리)	×	
29	안 제39조(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	
30	안 제40조(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	
31	안 제41조(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	
32	안 제42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	
33	안 제43조(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	
34	안 제44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	
35	안 제45조(시장별 특화지원)	×	
36	안 제46조(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	
37	안 제47조(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	
38	안 제48조(민관협력 활성화)	×	
39	안 제49조(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0	안 제5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41	안 제51조(세제지원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자료]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안 제7조), ②실태조사(안 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다만, 2027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1,700만원(연평균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26명, 회의 횟수는 연 4회로 가정
 -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30명으로 하고, 위원장인 중소벤처기업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인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정원 30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26인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을 고려하여 1회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함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추계 첫 해인 2027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임기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회의 횟수의 절반만 실시하는 것으로 함
-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1,700만원(연평균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년: 민간위원 수(26명) × 회의 횟수(2회) × 수당 단가(25만원) = 1,300만원
 - 2028~2031년: 민간위원 수(26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2,600만원

[표 2]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위원회(안 제7조)	13	26	26	26	26	117	23

주: 2027년의 경우 법안의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임기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나. 실태조사(안 제8조)

-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 연간 3,900만원씩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실태조사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3,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중소기업 수출경기실사지수(BSI) 도입(2025년, 6,600만원)”,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中企 설문조사(2025년, 1,200만원)” 등이 있음
 - 제정안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함

[표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 (안 제8조)	39	39	39	39	39	195	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

[참고자료]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재정사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세부사업명-내역명	회계·기금	20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제정안 관련 규정)
1	수출지원기반활용 - 수출바우처	일반회계	150,203	안 제19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제25조(해외수출 규제 대응 지원)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소상공인(K-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9,520	안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제40조(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3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일반회계	35,609	안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4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382	안 제24조(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제40조(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제49조(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클라우드전환(정보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892	
6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일반회계	17,519	안 제25조(해외수출 규제 대응 지원)
7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7,118	안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8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마케팅역량지원)	일반회계	1,500	안 제23조(해외마케팅 지원), 제43조(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제44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9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7,693	안 제33조(사전준비 지원), 제36조(현지화 지원), 제40조(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45조(시장별 특화지원)
10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3,896	
11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글로벌베이스캠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700	

연번	세부사업명-내역명	회계·기금	20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제정안 관련 규정)
12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수출컨소시엄	일반회계	19,839	안 제40조(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13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글로벌스타트업육성	일반회계	23,325	
14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클러스터	일반회계	3,000	
15	글로벌협력기반구축 -글로벌협력기반구축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890	안 제41조(외국정부등과의 협력)
16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촉진	일반회계	365	
17	기술혁신기반조성-ASEIC 운영	일반회계	1,575	
18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일반회계	2,021	안 제42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19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일반회계	1,852	
20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콜롬비아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일반회계	2,030	
21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용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	일반회계	3,079	
22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액셀러레이팅	일반회계	707	
23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베트남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실증 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 혁신 전문인력 양성	일반회계	600	

연번	세부사업명-내역명	회계·기금	2026년 예산 (백만원)	비고 (제정안 관련 규정)
2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수출지원센터운영 (수출지원센터운영)	일반회계	3,754	안 제46조(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제47조(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제48조(민·관 협력)
25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00	안 제26조(금융지원), 제37조(금융지원)
26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글로벌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16,37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